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3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제안이유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신청받아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면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험·조사 및 분석의 신청 및 처리 절차, 기간 등(안 제3조)
-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절차 및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기준(안 제4조 및 별표 3)
-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 등(안 제6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분석 관련하여 신청절차,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시험의 거부, 검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조례에서는 각종 시험·조사 및 분석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 및 범위가 모호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면제 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취지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의 체계와 구성을 따랐음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시험, 조사, 분석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내린 것에서 시험·조사와 분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그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2조의 새로 개정된 용어정의를 반영하여 의뢰·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시험·조사 및 분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표3을 신설하였음
- **안 제6조**는 기존의 모호한 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안	개정안
제6조(수수료 면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수산단체가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관할 공공용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2.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민간 양식장 등의 대표자·관리자가 그 협약에서 정한 공동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3.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어류의 대량폐사 등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대표자·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이 신청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거나 행정시책을 위해 필요하여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을 신청한 경우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조사 및 분석 등과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의 부과·징수·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전반의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타당성)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 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 수수료 납부,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각종 시험·조사 및 분석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 및 범위가 모호함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해소하고 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험·조사 및 분석 수행 시 수수료 부과 및 면제에 대해 명확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